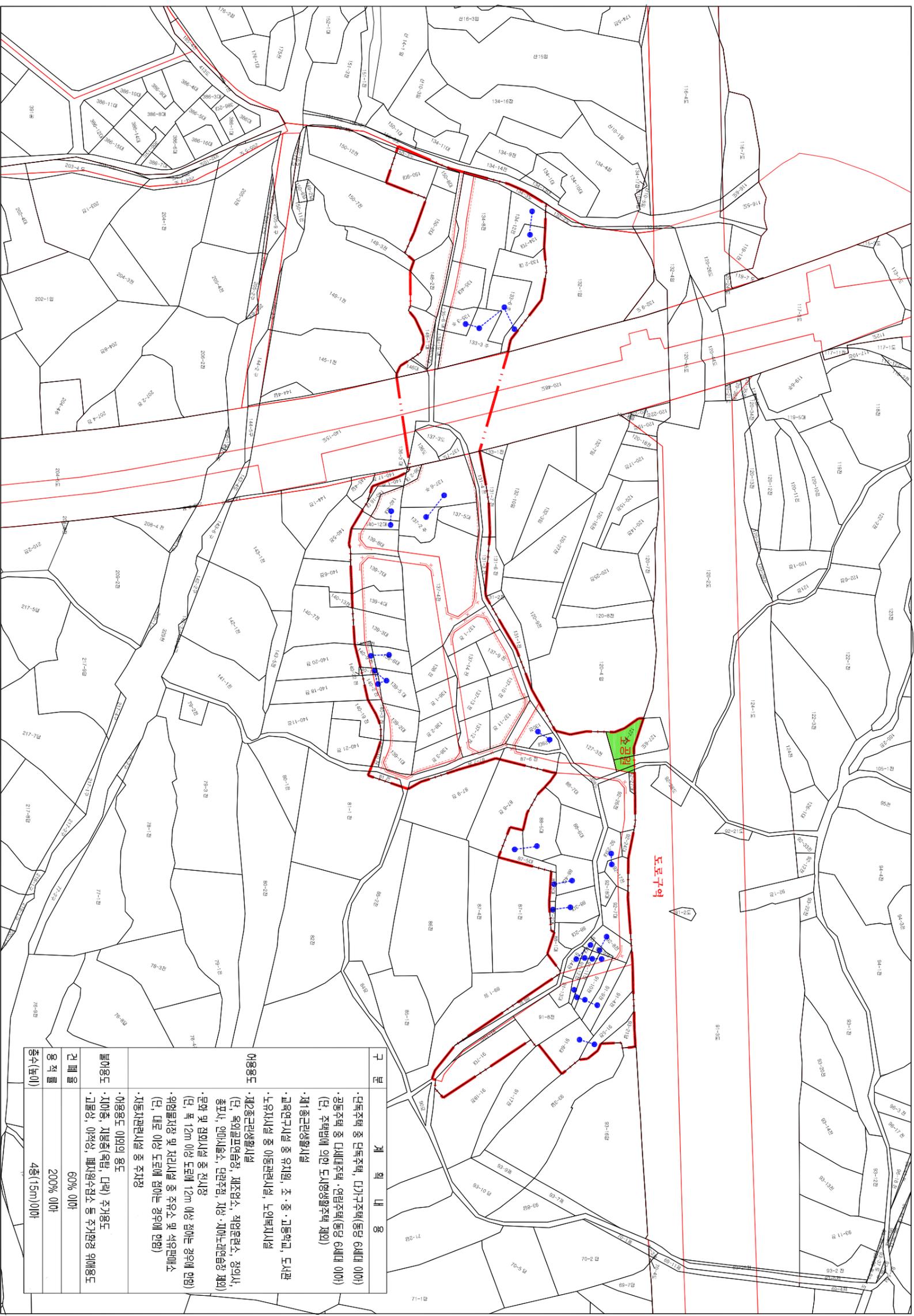


간도정지구 (연수 02)

지구단위계획에 대한
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
[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]

	지구단위계획구역
	지적경계선
	건축한계선
	공동개발 (권장)
	차량진출입불허구간
	공원
	녹지
	주차장
	용적률 증가높이
	간폐율

200% 이하	4층(15m)이하
60% 이하	-



구분	계획내용
용적률	· 단부주택 중 단부주택, 다가구주택(동등 6세대 이하) · 공동주택 중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(동등 6세대 이하) (단, 주택법에 의한 도시생활주택 제외)
간폐율	· 제1종근린생활시설 ·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도서관 · 노인시설 중 이동관선시설, 노인복지시설
용적률 증가높이	· 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, 옥외광고연승장, 제조업소, 작업원료소, 정역사, 종포사, 인쇄소, 단련점, 치상, 치아노출연승장 제외)
용적률	· 문헌 및 정보시설 중 전시장 (단,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) · 위생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(단, 도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)
용적률	· 아동유도 이외의 용도 · 치아중, 치발중(욕실, 다락) 주거용도 · 고층상, 아적상, 폐차일수점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
용적률 증가높이	· 아동유도 이외의 용도 · 치아중, 치발중(욕실, 다락) 주거용도 · 고층상, 아적상, 폐차일수점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
용적률 증가높이	· 아동유도 이외의 용도 · 치아중, 치발중(욕실, 다락) 주거용도 · 고층상, 아적상, 폐차일수점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
용적률 증가높이	· 아동유도 이외의 용도 · 치아중, 치발중(욕실, 다락) 주거용도 · 고층상, 아적상, 폐차일수점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